「교수연구위원회 규정」 신구조문대비표

2006. 2. 28. 제정 판 (시행 2006. 3. 1.) → 2015. 2. 16. 개정 판 (시행 2015. 3. 1.)

바뀜 3 · 신설 0 · 삭제 0 · 번호 변경 0

공식 원본 law.syu.ac.kr · https://suleap.syu.my/r/70/compare?from=167&to=168 · 내려받은 때 2026. 10. 21. 오후 3:18:53 · 밑줄은 바뀐 부분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연구진흥실장, 연구진흥팀장, 교무처장, 기획실장, 대학원교학부장, 학부장 중 2인, 재무실장, 논문편집인 2인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교원으로 구성한다. ②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외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연구진흥실장이 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연구진흥팀장이 서기가 된다.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연구진흥실장, 연구진흥팀장, 교무처장, 기획실장, 대학원교학부장, 학부장 중 2인, 재무실장, 논문편집인 2인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교원으로 구성한다. ②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외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연구진흥실장이 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연구부장이 서기가 된다. 〈개정 2015-02-16〉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장.단기 연구활성화 및 지원계획 2. 삼육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과제의 선정, 평가 및 연구비 배정, 지급중단 등 관리 3. 간접연구경비 징수기준 4. 연구비 집행 및 관리와 관련된 중요사항 5. 학술보고서 및 논문집 발간 6. 기타 교원의 연구 활동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 2015-02-16〉 1. 장.단기 연구활성화 및 지원계획 2. 삼육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과제의 선정, 평가 및 연구비 배정, 지급중단 등 관리 3. 간접연구경비 징수기준 4. 연구비 집행 및 관리와 관련된 중요사항 5. 학술보고서 및 논문집 발간 6. 기타 교원의 연구 활동
제7조(회의록) ①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심의된 중요사항은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회의록은 위원장과 서기의 서명, 날인이 있어야 한다.	**제7조(회의록)** ①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심의 의결된 중요사항은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02-16〉 ②회의록은 위원장과 서기의 서명, 날인이 있어야 한다.

개정문 (참고본)

원본(law.syu.ac.kr)에 개정문이 없어, 직전 판과의 신구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

「교수연구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연구진흥팀장이"를 "연구부장이"로 한다.

제6조 중 "심의한다."를 "심의 의결한다. 〈개정 2015-02-16〉"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심의된"을 "심의 의결된"으로 하고, "한다."를 "한다. 〈개정 2015-02-16〉"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